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6월 11일

CUOMO 주지사, 공직자 부패를 예방하고, 뉴욕의 투표법을 현대화하며, 기부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안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공직자 부패를 방지하고 뉴욕의 낙후된 투표법을 현대화하며, 거액의 기부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일련의 종합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3대 개혁안 패키지에는 새로운 공직자 부패 범죄 등급을 지정하고 뉴욕 검사가 주 전체의 공직자 부패를 퇴치할 능력을 강화할 **공공신뢰법(Public Trust Act)**, 16세 및 17세 개인이 투표에 예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들이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할 기회를 늘리고, 임시 투표용지를 포함시키는 융통성을 허용하는 **투표 개혁안**, 뉴욕 주민에게 선거 운동 자금을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알리고, 기부자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뉴욕의 높은 기부 한도액을 줄이기 위해 선거 자금의 공개적 기부 기회를 확보할 **선거운동 자금 개혁안** 등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주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지방 검사가 일반인을 사취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뉴욕의 선거 절차, 선거운동 자금 조달 시스템, 부패 방지를 위한 뉴욕주 법률 등은 너무 낙후되었고 비효율적이므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개혁안은 뉴욕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며 일반인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회복시킬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개혁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부패 근절을 위한 공공신뢰법(Public Trust Act)

현재 뉴욕주의 공직자 부조리를 정의하는 법은 낙후되었으며 공직자 부조리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기 위한 연방 법규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공공신뢰법(Public Trust Act)은 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신뢰법(Public Trust Act)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새로운 범죄: 새로운 공직자 부패 범죄 등급은 지방 검사(DA)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쉽고, "정부 부패"라는 새로운 범죄를 지정하며, 뇌물이나 뇌물 수수 시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지정하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 **뇌물 수수:** 뉴욕의 뇌물법은 부패 행위를 기소하려는 DA에게 불합리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신뢰법(Public Trust Act)에 따라 DA는 특정인이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과 뇌물을 제공한 시간을 확인함으로써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뇌물을 제공한 개인은 범죄 행위를 하게 됩니다. DA는 뇌물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의 분명한 이해 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뉴욕법과 연방법을 통합한 것입니다.
- **정부 부패 행위:** 현재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만이 "정부 기망 행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고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신뢰법(Public Trust Act)은 공공 질서를 기만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부 부패 행위"라는 새로운 중범죄를 설정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최고 25년 형을 받을 수 있으며 평생 주 정부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뇌물 수수 미신고:** 현재 뇌물수수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신뢰법(Public Trust Act)에서는 공직자가 뇌물수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가 성립됩니다.

세금 남용에 대한 새로운 엄격한 처벌: 공공신뢰법(Public Trust Act)에 따라 일반인을 기망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며 평생 정부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처벌 가중:** 공공 소유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현재는 너무 경미하여 범죄자는 최소한의 처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신뢰법(Public Trust Act)으로 절도, 돈세탁, 공공 재산인 컴퓨터 또는 차량의 무단 사용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 법으로 "공직자 불법행위"의 처벌은 경범죄에서 최고 15년 형의 중범죄로 강화됩니다.
- **정부 관련 업무 평생 금지:** 현재 부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주 관련 사업을 하고 공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공공신뢰법(Public Trust Act)에 따라 공직자 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평생 주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선거 또는 민원실에서 일하지 못하며, 로비스트로 등록하거나 Medicaid 제공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를 새로운 도구: 지방 검사가 공직자 부패를 더 효과적으로 근절하게 하기 위해 공공신뢰법은 몇 가지의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격자를 위한 "면책 혜택 활용":** 현재 법률에 따르면 목격자가 제공한 증거와 관계 없이 DA가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공직자 부패에 대해 심사하는 배심원 앞에서 증언하는 개인은 기소될 수 없습니다. 공공신뢰법에 따라 목격자는 "사안별 면책 특권"이 아니라 "증언의 사용" 면책 특권만 받게 함으로써 DA는 공직자 부패와 관련된 범죄 행위의 목격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사취 금액의 3배 배상:** 현재는 정부를 기망한 개인은 정부로부터 사취한 금액만큼만 배상하면 됩니다. 공공신뢰법(Public Trust Act)에서는 불법 거래로 취한 이익의 최고 3배까지 DA가 요청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자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한의 수정: 현재 지방 검사는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도 5년 동안 조사할 수 있지만 동일한 공직자 부패 행위를 하기 위해 이들과 공모하는 비공직자의 기소 기한은 훨씬 짧습니다. 공공신뢰법에 따라 공직자의 신분으로 부정 행위를 하려는 공직자와 그 일행에게 모두 동일한 법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뉴욕주 공공신뢰법 지방검사협회(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의 보충 안내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신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안된 법안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안 규약은 여기).

투표 개혁

뉴욕의 선거법은 낙후되고 비효율적이며 제한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뉴욕 주민이 정부를 되찾도록 할 선거법을 개혁하게 됩니다. 주지사가 주도하는 투표 개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선거위원회의 독립적인 집행 부서: 주선거위원회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선거 개혁으로 선거 위원회에 새롭고 독립적인 최고 집행 위원회가 마련되어 자체 이니셔티브에 대해 조사하고 형벌을 직접 부과하며, 선거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교착 상태에 있다고 해도 DA처럼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16세 및 17세 개인의 예비 등록: 뉴욕은 유권자 중에서 64% 미만이 투표 등록을 하여 전국에서 투표자 등록자 수가 47번째이며 젊은 층의 투표 등록 인원은 다른 연령 그룹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주지사의 개혁으로 이들은 "예비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 등록자가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투표 등록이 됩니다.

투표용지 간소화: 뉴욕 주의 투표용지는 이해하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유권자의 혼란을 선도하고 이 때문에 선거 당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주지사의 선거 개혁으로 투표용지를 간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권자 등록 기간 연장: 2012년에 뉴욕의 투표자 비율은 44위였으며 유권자 중에서 44%만 투표했습니다. 투표 참여율이 저조했던 이유는 투표 등록자 목록을 선거일로부터 25일 전에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주지사의 개혁으로 선거일로부터 25일 전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투표자 등록을 하여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시 투표용지 처리를 유권자에게 더욱 편리하게 현대화: 현재 법률에 따르면 유권자 목록에 유권자 이름이 없을 경우, 임시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투표용지는 올바른 선거 구역에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주지사의 선거 개혁으로 선거일 당일에 임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유권자는 다른 선거 구역에서 투표했다고 해도 투표수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후보와 투표자가 기간 내에 정당 등록 변경 허용: 현재 유권자나 후보가 정당에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선거가 끝나야 등록이 유효합니다. 이것은 유권자가 예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지사의 선거 개혁으로 이러한 요건이 사라지고 유권자의 정당 등록은 선거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수령한지 3개월 후에 유효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투표 개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안된 법안을 여기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안 규약은 여기와 여기).

선거 비용 조달 개혁: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선거 비용 조달 제약이 가장 약한 곳 중 하나이며 대규모 기부자와 특별 이해관계가 선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 법안으로 뉴욕주의 선거 자금 조달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혁하고 선거에서 거액의 기부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Disclose NY: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공시법(Disclosure Law): 뉴욕 주민들은 선거 비용을 누가 조달하고 TV의 선거 광고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에 따라 후보자와 외부 지지 그룹은 정기적으로 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의 개혁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 또는 패배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광고를 완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후보자와 정당은 기부금을 수령한지 48시간 이내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치 캠페인의 공공 자금 조달: 뉴욕은 전국에서 정치 캠페인에 기부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뉴욕의 정당 후보들은 다른 주보다 거액의 기부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지사의 개혁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뉴욕시 시스템을 모델로 한 공공 자금 조달 시스템을 실시하여 최고 $175의 기부금까지는 $6당 $1로 매칭됩니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낮은 기부금 한도 및 :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기부금 한도가 높으며 거액의 기부자가 소액 기부자에게 영향력을 가장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개혁으로 *모든*뉴욕주 사무실을 위한 기부금 한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정당의 "관리 계정"에 대한 기부금은 연간 $25,000로 제한되며, 정당 위원회는 소액 기부금(기부자 당 $500 미만)만 후보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연간 $1,000로 제한되고 LLC 허점을 종료하여 LLC를 개별 기부자가 아닌 기업으로서

대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률에 따른 기부금 한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차트와 주지사의 제안된 개혁안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금의 개인적 사용: 선거 자금의 지출 방법과 관련이 있는 뉴욕의 법률은 국내 다른 지역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지 않아 후보자와 전 공직자가 후보 활동이나 공무와 실제 관련이 없어도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사의 개혁에 따라 기부금은 선거나 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후보자나 공직자의 독점적인 개인적 이득을 위한 지출은 금지되며 명시적으로 금지된 지출 항목 목록은 법률에 따라 기록됩니다.

주지사의 선거 자금 조달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안된 법안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안 규약은 여기).

Susan Lerner, Common Cause/NY 최고 책임자는 "Common Cause/NY는 뉴욕주의 선거 자금조달 개혁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공직자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패키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당이 기부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주지사의 반복적인 노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입법기관이 주지사와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ommon Cause/NY는 Fair Elections Coalition과 함께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로 만들려는 주지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chael J. Malbin, The Campaign Finance Institute의 최고 책임자는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뉴욕시에서 효과가 입증된 소액 기부금 매칭 자금 시스템을 바탕으로 합니다. CFI의 연구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소액 기부금을 선거 운동 자금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후보자의 노력이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도 현저하게 적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이 정부에서 더 비중 있는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은 특히 현대의 공시 및 효과적인 집행과 결합되었을 때 *Citizens United*에 부응하는 효과적입니다."

Dick Dadey, Citizens Union의 최고 책임자는 "Cuomo 주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한 공공 자금 조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요청 이외에도 종합적인 선거 운동 자금조달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부터 세션이 끝날 때까지 뉴욕주의 정당 리더들은 차이를 서로 조율하고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캠페인 자금 조달 개혁안을 모아야 합니다. 주지사의 프로그램 법안이 다른 부패 방지 방안에 추가됨으로써 뉴욕 주민의 기대치도 올라가 리더들이 오랜 세월 주정부를 망쳐온 부패의 문화를 청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awrence Norden, Brennan Center for Justice의 Democracy Program 부책임자는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현재 캠페인 재정 시스템을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한 재정 시스템은 특별 이해 관계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제공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영향력과 대리 권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종합적인 법안을 도입하여

기부금 한도와 공적 자금을 줄이고 투명성은 높이며 집행력을 강화하게 된 것을 크게 반기고 싶습니다. 모든 정당의 뉴욕 주민들은 이러한 합리적인 개혁을 지지합니다. 핑계만 찾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입법기관 리더나 컨퍼런스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Cuomo 주지사와 합력하여 중요한 개혁의 노력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